Q&A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보건관리자 자격인정 여부

Q (1) '83. 2. 4부터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다 '90. 1. 13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 7. 14부로 보건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91. 10월 산업안전교육원에서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한 이래 지금까지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 인사발령으로 A전화국에서 B전화국으로 전근시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92. 3. 21) 이전에 교통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만 면제되는지 또는 보수, 신규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A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귀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귀문의 경우 "A전화국")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행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보는 것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들의 업무 계속성, 직업안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이들에게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장(귀문의 경우 "B전화국")에 근무하게 되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임(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복귀하여도 A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되지는 아니함)

(2)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신규 · 보수교육)은 면제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4.10) 제55조의2(산업안전 · 보건 교육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 면제됨

공단의견 "을설"

-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92.3.21) 이전에 행한 질의회시나 부처간 협의사항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이 규칙 시행당시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입법화하였으므로, 법령보다 하위효력에 해당되는 질의회시나 협의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보수교육만 면제할 수 있음.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 및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 설치기준

Q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75호)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컨베이어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컨베이어(약 400~500)상에 일정거리(10~20mm) 간격으로 비상정지장치(EMERGENCY PUSH BUTTON)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컨베이어 연장길이가 30m미만일 경우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할 경우

A&Q

법적 인정 여부와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기준 및 정의는

(2) 크레인 제작 · 안전 ·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0-79호)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주행로상에 2대이상의 크레인이 병렬로 설치된 것(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경로상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대는 STANDBY용이고 1대만 운행할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와 "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란 크레인에 운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실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에서 REMOTE CONTROLLER로만 운전하는 것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A (1)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장소, 설치간격 및 수량 등은 콘베이어의 운전(작업)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즉 작업자와 가장 근접한 장소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작하여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컨베이어의 끝(TAIL)부분에서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라면,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동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버턴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동 비상정지장치를 조작,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만약 작업자가 컨베이어 전 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하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예 : 로우프식 푸쉬풀방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2) 운전실을 갖춘 크레인은 1대가 STANDBY용이라 할지라도 항시 사용대기 상태이며, 이 경우 두 크레인이 동시에 동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 경로상에의 충돌 위험은 항시 존재하므로 충돌방지장치의 설치는 불가피 함.

- REMOTE CONTROLLER에 의한 운전방식은 작업지침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과 운전자가 근거리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분진 및 증기 등의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시계불량 및 전자방해파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CONTROLLER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Q 폐사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 중 천단침하 현상이 타나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지시를 받아, 숏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Q&A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본공사 수요처 감독부는 폐사의 F.E.M 해석 용역비에 대한 도급금액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폐사에서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적용범위내에서 TUNNEL 굴착과 병행하여 시행한 계측결과에 의한 설계조건 재검토를 위한 TUNNEL F.E.M 해석 용역비를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용역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은지 여부

A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 · 사용할 수 있는지

Q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영수증 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 · 사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 · 사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공동도급 ·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출방법

Q 산재보험 일괄적용업체가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율에 따라 공사구간을 분담하여 시공할 경우 발생된 재해자는 대표회사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회사의 산재보험 사업 개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계산되는지

A&Q

A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 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TOWER CRANE 설치 · 해체작업 자격기준

Q TOWER CRANE 설치 · 해체작업 자격기준은

A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제10호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됨

따라서 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 면허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자나 3월이상 당해 작업유경험자(높이 66m미만인 것에 한함)임.

- 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필요없고 다만, 재해예방차원에서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자가 조종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사업장내 실험실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Q 실험실에서 실험 ·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시약을 소량 간헐적(월 3~4회 정도)으로 사용할 경우(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 사업장은 특정화학물질 13종과 유기용제 12종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음. 유해물질은 실험실에서 분석 및 시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사용량이 소량이고 '89자체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90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연구업무(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제6호 카목)와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동규칙 제186조)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마목 및 바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험실이 상기에 해당될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